

# 자체평가규정

개정 2019.04.17. 개정 2022.02.18.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학칙 제51조의 3에 따라 해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이라 한다)의 교육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·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지속적 교육품질 관리 및 환류,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2016.12.08.>

### 제2조 (평가원칙 및 목표)

평가는 객관성, 공정성, 신뢰성을 가지며, 전문 직업인력 양성을 위한 본교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본교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.

### 제3조 (평가대상)

평가대상은 본교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.

### 제4조 (평가영역)

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2016.12.08.>

- ① 교육연구 영역
- ② 조직·운영 영역
- ③ 시설·설비 영역
- ④ 교육품질 관리 및 환류
- 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영역

### 제5조 (항목별 평가)

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,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, 항목별 평가등급 등 세부사항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제6조 (평가시기)

대학 자체평가는 매년 실시한다. <개정2016.12.08., 2022.02.18.>

## 제2장 평가기구

제7조 (총괄부서)

- ①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괄책임자를 둔다.
- ②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<개정 2019.04.17. 2022.02.18.>
- ③ 자체평가의 기획·운영·조정·관리에 관한 실무업무는 기획팀(이하“총괄부서”)에  
서 담당한다.<개정 2019.04.17. 2022.02.18.>
- ④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자체평가업무 총괄
  - 2. 자체평가 역량향상
  - 3.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
  - 4. 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
  - 5.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제8조 <삭제 2019.04.17>

- ① <삭제>
- ② <삭제>
- ③ <삭제>
- ④ <삭제>
  - 1. <삭제>
  - 2. <삭제>
  - 3. <삭제>
- ⑤ <삭제>

제9조 <삭제 2019.04.17.>

제10조 <삭제 2019.04.17.>

제11조 (실무위원회)

자체평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평가영역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##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

제12조 (평가계획 수립)

총괄부서는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,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계열(과)에 통지한다.

제13조 (평가자료 제출)

행정부서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자료를 입력하고 제출한다.  
<개정 2022.02.18.>

제14조 (평가실시)

- ① 총괄부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.
-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.

제15조 (실사)

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계열(과)에 실사를 할 수 있다.

16조 (평가결과 보고)

총괄부서는 평가결과를 대학 경영진에게 보고한다.<개정2016.12.08.>

제17조 (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)

- ① 평가 결과는 교내 언론매체,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한다.
- ② 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라 계열별 우수 교육단위와 해당 행정부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·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자체평가의 결과는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, 대학특성화 정책 반영, 교육단위 및 행정부서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- ④ <제18조로 이동>

제18조 (수당 및 연구비)

자체평가에 참여하는 위원 및 담당실무자에게는 평가업무 수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본조신설 ><제17조 4항에서 이동><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>

제19조 (기타)

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체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본조신설 ><제18조 에서 이동>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12.0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2.1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.